

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전과 및 소속변경 [제목개정 2020.03.13., 2021.12.03.]

제2조(개념) [전문 개정 2020.03.06.] <삭제 2021.12.03.>

제3조(전과 허가) ① 학칙 제20조 제1항의 전과의 허가는 재학성적과 전출전공의 지도교수, 전입전공의 책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② 학칙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세칙으로 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2.28.>

1. 임상병리학과
2. 간호학과
3. 치위생학과
4. 방사선학과
5. 작업치료학과

③ 학칙 제20조 제4항 제3호의 세칙으로 정한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어학 능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

1. 미래커리어대학은 교육과정 및 운영의 특성상 미래커리어대학 내에서의 전과만 허용되며, 미래 커리어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 및 전공으로의 전과(전입 및 전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캠퍼스아시아학과는 교육과정 및 운영의 특성상 전과(전입)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전문개정 2021.12.03.]

제3조의2(소속변경 허가) 학칙 제20조의2에 따른 소속변경의 허가는 학칙 제31조 제1항의 과정이수학점 수료 전으로 제한한다. <신설 2021.12.03.>

2-1-2-2 제1장 대학

제4조(전과 선발고사) 학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선발고사를 행할 경우 선발기준은 총 평균 평점 성적순으로 한다. [제목개정/전문개정 2021.12.03.]

제5조(허가) <개정 2019.09.01., 2020.03.13.> <삭제 2021.12.03.>

제6조(기득학점 및 성적의 인정) 학칙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기득학점 및 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과 전 기득학점 및 성적은 전입 학과장이 인정한 범위에서 학점 및 성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2.08.29.>
2. 소속변경 전 기득학점 및 성적은 변경 후 소속의 학점 및 성적으로 인정한다.

[제목개정/전문개정 2021.12.03.]

제 3 장 휴학 및 복학

제7조(휴학구분 및 구비서류) ① 휴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휴학 할 수 있다.

1. 일반휴학

가.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을 경우 국·공립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발하는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동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될 경우 휴학을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19. 06. 07.>

나. 가사휴학 : 가정 사정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 후 가사휴학을 할 수 있다. 단,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가사휴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03.26., 2022.08.29.>

다. 임신·출산휴학 : 임신·출산으로 인해 휴학할 경우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육아휴학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생은 양육을 위해 휴학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단,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마. 기타휴학 :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출·입국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휴학을 승

인 할 수 있다. <신설 2020.03.13.>

2. 군입대휴학 :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숙려휴학 : 숙려휴학 신청자는 지도교수의 요청과 심사를 통해 휴학할 수 있으며,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1/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에 의거 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를 하게되면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지 못하고 입영한 자는 군복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의거 휴학한 자로서 군입영일자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이전 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기말고사만료시점 이후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휴학한 자가 휴학사유의 소멸로 다음 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 휴학취소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휴학 취소원에 의한 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8.09.01.]

제8조(휴학원 제출절차)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에 휴학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9.>

제9조(휴학허가) 휴학허가 및 휴학기간 연장은 총장이 정한다. 단, 제 3학년 편입 및 재입학자의 일반휴학은 2학기 이내로 한다.

제10조(귀향신고 의무) 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휴학한 자가 입영 후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귀향조치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교무처에 귀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② 귀향신고를 하는 시점이 수업일수 1/3선 이전인 경우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고, 수업일수 1/3선 이후는 가사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01., 2018.09.01.>

제11조(제출기간) 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학은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2-1-2-4 제1장 대학

②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휴학은 입영전일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제12조(등록금 인정) ① 등록금을 납입하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휴학한 자가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휴학하였을 경우와 제7조 제1항 제1호 마에 의거 총장이 승인하는 기간 내 휴학할 경우에는 복학시 등록금 차액을 면하고, 수업일수 1/4선 이후 휴학하였을 경우에는 휴학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복학시 당해학기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복학시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 중 백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0.10.01., 2018.09.01., 2020.03.13.>

1. 학기개시 1/4선 이내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전액을 면제한다.
2. 학기개시 1/4선 경과후 학기개시 30일 이내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1/6을 납부 한다.
3. 학기개시 30일 경과후 부터 학기개시 60일까지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1/3을 납부 한다.
4. 학기개시 60일 경과후 부터 학기개시 90일까지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1/2을 납부 한다.
5. 학기개시 90일 경과후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전액을 납부 한다.

② 등록금을 납입하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휴학한 자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입영한 경우에는 복학시 해당 학기 등록금이 면제되며,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이후에 입영할 경우에는 학점취득 여하를 막론하고 복학시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징수한다.<개정 2010.10.01., 2018.09.01>

③ 학기 개시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휴학한 자가 제7조 제2항에 의거 휴학 연기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복학시 등록금의 금액이 휴학당시 납입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라도 그 차액은 납부하지 않으며, 학기 개시 수업일수 1/4선을 경과하여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휴학한 자가 제7조 제2항에 의거 휴학연기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8.09.01.>

제13조(휴학자의 성적인정) ① 군휴학자는 당해 학기수업일수의 2/3선 이상을 출석하고, 휴학한 자의 기말성적은 당해학기 수업일수 2/3선까지의 출석, 과제, 예습 및 시험성적을 100% 인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0.10.01>

② 일반휴학자는 기말고사 만료일 이전의 휴학은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복학절차) ① 휴학자의 복학은 해당 학기 현금등록기간에서 수업일수 1/3선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0.10.01>

② 복학시에는 복학원 및 복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9.>

③ 인하 복학시에는 인하대상 학년, 학기의 취득학점은 취소한다. <신설 2020.03.13.>

제 4 장 부 전 공

제15조(이수신청 및 이수자격) ① 부전공은 2학년부터 매 학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기말고사

만료 후부터 해당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소속 전공 지도교수 및 부전공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한다. 단,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재학 1학기 이상 이수 후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2020.07.17., 2022.08.29., 2023.10.06.>

② 부전공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학년별 수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은 재학 1학기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2020.12.11.>, <삭제 2023.10.10.>

③ 전공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부전공자를 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디자인대학은 실기시험을 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0.1., 2014.01.01>

④ <삭제 2017.12.01.>

⑤ 부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자유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래커리어대학 소속 전공을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미래커리어대학내의 학생만 미래커리어대학내에서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⑥ 부전공의 이수승인을 받은 자가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취득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졸업이 불가하며, 부전공을 취소 할 경우 기 취득학점은 타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03.13., 2022.12.02>

⑦ <삭제 2020.03.13.>

⑧ <삭제 2017.12.01.>

⑨ 학칙 제36조 제4항의 세칙으로 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는 제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02.28.>

제16조(부전공 이수과목) ① 부전공을 지원하는 자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본전공에서 54학점 및 부전공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칙 제36조 제4항의 세칙으로 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및 건축학과 소속 학생은 본전공에서 정한 졸업 이수학점 및 부전공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020.03.13., 2022.06.10., 2023.12.08.>

② 부전공을 위해 이수한 교과목이 본전공의 교과목과 중복될 시는 6학점 이내에서 중복으로 인정하고, 그 외는 본전공 과목으로만 인정한다. <개정 2017.12.01., 2022.06.10.>

③ 부전공의 교과목 중 실험·실습을 요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목적을 위해 내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08.>

제 5 장 복 수 전 공

제17조(이수신청) ① 복수전공은 2학년부터 매 학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기말고사 만료 후부터 해당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소속 전공 지도교수 및 복수전공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한다. 단,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재학 1학기 이상 이수 후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6, 2020.03.13., 2020.07.17., 2022.08.29., 2023.10.10.>

② 복수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자유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래커리어대학 소속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미래커리어대학내 입학 학생만 미래커리어대학내에서 복수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③ 전공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다.

④ 디자인대학은 실기시험을 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0.1., 2014.01.01.>

⑤ 교양학위트랙의 경우는 본전공을 배정받은 후 소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수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6>

⑥ 학칙 제37조 제3항의 세칙으로 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는 제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02.28.>

제18조(승인요건) ① ~~복수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학년별 수료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은 재학 1학기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2020.12.11.>, <삭제 2023.10.10.>

② <삭제 2020.12.11.>

제19조(이수학점) ① 복수전공지원자는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각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18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해서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각 32학점으로 하고, 학칙 제37조 제3항의 세칙으로 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및 건축학과 소속 학생은 본전공에서 정한 졸업 이수학점 및 복수전공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2018.12.14., 2022.06.10., 2023.12.08.>

② 교양학사학위트랙 신청자는 신청 전에 이수한 교양학사학위트랙 관련 교과목을 최대 6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위트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2. 16> <개정 2017.03.01., 2019.09.01., 2020.07.17.>

③ 복수전공을 위해 이수한 교과목이 본전공의 교과목과 중복될 시는 12학점 이내에서 중복으로 인정하고, 그 외는 본전공 과목으로만 인정한다. <신설 2022.06.10.>

④ 제1항 및 제3항은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목적을 위해 내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08.>

제20조(복수전공자의 부전공 학점인정) 부전공을 이수한 자가 복수전공을 희망할 경우 기 취득한 부전공 취득학점은 동일과목의 학점을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19.09.01.>

제22조(복수전공의 포기) ① 복수전공이수 신청자가 사정에 의하여 동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전공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을 포기할 시에는 기취득학점을 타전공 학점으로 인정 한다. <개정 2020.03.13., 2022.12.02>

제23조(학위수여) 복수전공자가 본전공 및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주전공 학위명과 복수전공 학위명을 병행표기하여 학위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2.06.10.>

제 6 장 융합연계전공 <신설 2012.03.01.> [제목개정 2019. 06. 07.]

제24조(자격 및 신청) ①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연계전공을 2학년부터 매 학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7.17., 2021.12.03.>

② 융합연계전공은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주전공으로 이수시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전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전공 이수포기는 학칙 제20조 제2항의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03.>

[전문개정 2019.06.07.]

제25조(지원범위 및 전공인정) ① <개정 2019.06.07.> <삭제 2021.12.03.>

② <개정 2019.6.7.> <삭제 2021.12.03.>

제26조(선발인원 및 기준) 융합연계전공의 정원, 이수자의 신청 및 선발인원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6.07.>

제27조(전형방법) ① 융합연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신청한 자는 소정의 선발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6.07., 2020.03.13.>

② 제1항의 선발전형의 세부사항은 융합연계전공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6.7., 2020.03.13.>

제28조(학점이수) ① 융합연계전공 이수자는 주전공으로 60학점(전공필수 18학점 이내) 이상, 복수전공으로 36학점 이상, 부전공으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2018.12.14., 2019.06.07.>

② 융합연계전공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주전공의 교과목과 같을 경우 규정에서 정한 학점 범위 내에서 중복으로 인정하고, 그 외 주전공 교과목 학점은 주전공 이수 학점으로만 인정한다. <개정 2019.06.07., 2021.12.03., 2022.02.28.>

③ <삭제 2019.06.07.>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목적을 위해 내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08.>

제29조(이수포기) 융합연계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수 교과목은 타전공으로 인정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전공 및 포기한 융합연계전공의 부복수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6.07., 2021.12.03.>

제30조(졸업사정 및 시기) ① 융합연계전공 졸업사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9.06.07.>

② <삭제 2019.06.07.>

제31조(학위수여) 융합연계전공자가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단, 융합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경우 제2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06.07.] <개정 2022.06.10.>

제32조(제증명) [전문개정 2019.06.07.] <삭제 2021.12.03.>

제 7 장 연 계 교 육

제33조(프로그램유형) 셀프브랜드개발 연계교육프로그램(이하 ‘연계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전공심화 마이크로 디그리 및 융합연계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이하 “MD”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09.01., 2021.12.03.>

제34조(개설요건) 연계교육프로그램은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 15학점 이내에서 개설한다. 단, 국내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정 및 협정에 따른 규정 등을 우선 적용한다.

1. 전공심화 MD: 비교과 프로그램 1개 이상 이수
2. 융합연계 MD: 융합연계 분야 3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18.09.01., 2019. 06. 07., 2020.03.13., 2021.12.03., 2024.02.29., 2024.04.12.>

제35조(이수신청) 연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려고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연계교육과정을 소정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1., 2018.09.01., 2020.03.13.>

제36조 <삭제 2010.09.01>

제37조 <삭제 2010.09.01>

제38조 <삭제 2010.09.01>

제39조(변경) 연계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청자가 사정에 의하여 동 이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2020.03.13.>

제40조(이수증수여) 연계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청자가 이수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이수증을 수여한다.

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3.13.>

[본조신설 2018.09.01.]

제 8 장 수 강 신 청

제41조(수강신청절차 및 신청학점) ① 매 학기 별도로 정하는 수강신청기간에 학생지원시스템의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입력한다.

② 최대신청 학점은 매학기 1학년 18학점 그 외의 학년은 19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09.01., 2014.01.01., 2017.09.01.>

제42조(실적과목 재수강) 실격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제43조(불신청 이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4조(신청과목의 변경 및 취소) ① 개강 후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신청과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에 수강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강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9.01.>

② 선수과목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학생, 수업진행을 크게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 담당교수는 학과장에게 통보하여 학생의 수강등록을 취소케 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③ 수강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과목번호) 수강교과목의 교과목번호는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제46조(학기당 취득학점의 초과신청) ① 학칙 제32조 제1항 단서의 시행세칙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수전공/연계전공/부전공/연계부전공/교직신청자
2. 조기졸업 대상자
3. 직전학기 성적 4.3이상인자
4. 동서글로벌프로그램 신청자
5. 국외 타대학 복수학위 신청자

6.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신청자
7. 학·석사연계과정에서 선발된 자
8. 기타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한 자

② 학칙 제32조 제2항의 학기당 최대취득학점을 초과한 수강신청은 일부과목을 무효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

제47조(중복수강금지) 동일 교시에 중복 수강신청한 과목은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교육실습 신청)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4학년 1학기에 교육실습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수강지도) 수강신청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취득을 위해 교과목 이수구분별로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소정기간 내에 수강지도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제50조(재수강) ① 학업성적에 따른 재수강 허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2.12.02.>

② 재수강 최고학점은 B+로 제한하며, 기취득 성적은 재수강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취소된다. <신설 2015.03.01.> <개정 2022.12.02.>

③ 재수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장 성적의 평가

제51조(성적의 등급, 평정 및 분포와 평가) ①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에 의한다.

1.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학칙 제44조에 의한다.
2. 학업성적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frac{(\text{교과목평점} \times \text{학점수})\text{의합계}}{\text{수강신청총학점수}}$$

② 학업성적의 등급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절대평가를 할 수도 있다. 학업성적의 등급분포 비율 및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04., 2012.05.01., 2022.02.28., 2023.12.08.>

③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 시험성적 및 과제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수시 평가는 학기 중 수시로 행하고 기말시험은 이론과목에 한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채

플, 실험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2018.09.01>

2.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출 석 : 10 - 20 %

나. 시험 : 50 - 80 % <개정 2015.03.01.>

다. 과제물 등 : 10 - 30 % <개정 2015.03.01.>

3.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미래커리어대학의 경우 출석 20% 이내, 시험 80% 이내, 과제물 등 과정중심평가 80% 이내에서 수업계획서에 사전 공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18.12.14.> <개정 2019. 06. 07.>

④ 성적정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적정정기간은 다음 학기 현금등록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2. 성적정정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22.08.29.>

제52조(성적 취소 및 삭제)①취득한 성적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에 한하여 7학기 이수 후 최대 18학점까지 취득성적을 삭제할 수 있다. 단, 삭제할 수 있는 성적은 F로 제한한다. <개정 2010.03.01., 2014.03.01., 2021.12.03., 2022.12.02.>

1.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때 <신설 2022.12.02.>

2. 대체과목을 이수한 때 <신설 2022.12.02.>

② 학생의 신청으로 취득성적이 삭제된 교과목은 복원처리되지 않는다. <개정 2022.02.28.>

③ 취득성적이 삭제된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에서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 계산에서 제외되며,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거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 각종 조치는 유효하다. <개정 2022.02.28.>

④ 교양필수교과목 중 규정에서 정한 교과목의 재수강 불가능 학점에 한하여 제1항 단서의 최대 학점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21.12.03.>

[제목개정 2021.12.03.]

제 10 장 학 사 경 고

제53조(학사경고) 졸업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재학중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에게는 학사 경고를 한다. 다만, 학사경고 대상자 중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내 부서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학사경고를 면제한다. <개정 2020.03.13., 2022.12.02.>

제54조(제적유예) ① 학칙 제27조의 세칙으로 정한 학적유지에 대한 여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그 의사가 불분명하고, 숙려휴학이 가능한 자
 2. 학칙 제27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이중 학적 해소를 이유로 제적유예를 신청한 자
-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숙려휴학으로 처리한다. 단, 숙려휴학을 모두 소진한 경우 제적을 유예할 수 없다.
- ③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에 따라 재학 및 휴학으로 처리한다. 단, 학기 개시일 30일 내에 이중 학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학기 개시일 30일에 제적한다.

[전문개정 2022.12.02.]

제 11 장 출석과 결석

제55조(출석) ① 지각 3회나 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인정한다.

- ② 담당교수는 매주 담당수업시간 후 출결관리시스템에 수강학생의 출결사항을 입력 하여야 한다.
- <신설 2015.03.01.>

제56조(출석인정) ① 유고결석 사유가 있을 경우 유고결석계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결석기간의 출석을 인정한다. <개정 2020.12.11.>

- ② 유고결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09.01.]

제57조 <삭제 2018.09.01.>

제58조 <삭제 2018.09.01.>

제 12 장 휴보강 관리

제59조 (휴강) 휴강은 법정공휴일에 의한 휴강, 교내공식행사에 의한 휴강, 공무출장에 의한 휴강, 개인출장에 의한 휴강 등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5.03.01.]

제60조(보강방법) ① 학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수업의 결손이 생겼을 경우 보강주간에 보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11.>

② 교내 공식행사(민석축제 및 체육대회, 수시면접 등)에 의하여 수업의 결손이 생겼을 경우 보강주간에 보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③ 공무출장일 경우 출장 결재를 득한 후에 보강계획을 입력하고 계획에 따라 보강하여야 한다.

④ 개인출장은 학기 중 출장을 원칙 적으로 금한다. 단, 출장승인을 득한 경우 보강계획을 입력하고 계획에 따라 보강하여야 한다.

⑤ 기타의 경우는 사유 발생 즉시 휴강 사유와 함께 보강계획을 입력하고 계획에 따라 보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3.01.]

제61조(휴강제한)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강 후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학기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3.01.]

제 13 장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제62조(인정과목과 학점) ①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하며,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상 필히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지정 이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단, 교양필수과목은 전적학교에서 취득한 교양학점과 관계없이 편입학년 이전까지의 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06. 07., 2020.03.13.>

② 편입이전 학년의 학점인정은 학칙 제32조의2의 수료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5.03.01., 2020.03.13.>

③ 학점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3.13.>

제63조(인정절차) 학점의 인정은 전공 책임교수의 사정안을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성적표기) 이수가 인정된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이수구분별 인정학점을 성적표에 표기한다.

제65조(상이학점인정)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과목별 학점이 본 대학교와 상이할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학점 수에 맞추어 인정한다. 단,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별 학점이 본 대학교에 개설된 학점보다 낮을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3.13.>

제66조(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협약) 양 대학 연계교육협약에 의하여 전공별 연계교육과정은 양 대학 교류전공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 14 장 교과과정의 이수

제67조(교과이수) ① 학칙 제28조에 의거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이수연도 교과과정에 의한다.

<개정 2021.12.03.>

② 이수구분, 기취득학점, 성적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소급되지 아니한다. 단, 기 이수 교과과정의 필수 교과목 중 규정에서 정한 교과목의 미이수에 한하여 이수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③ 사회봉사의 경우는 교양으로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개정 2011.09.01>

제 15 장 졸업종합시험

제68조(졸업종합시험)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졸업종합시험은 전공과목으로 한다. 단, 중전 규정에 따라 영어시험(영어졸업인증제 포함) 또는 컴퓨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학생은 교무처장이 지정한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으로 영어시험 또는 컴퓨터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2018.09.01., 2018.12.14., 2021.12.03>

② 외국인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과목 외 다음 각 호의 1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입학시 유효한 각 호의 1을 취득한 학생은 재학 중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02.28.>

1. 한국어트랙 소속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 이상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수학과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영어트랙 소속 외국인 학생은 TOEFL 53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시험성적(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03.>
- ③ <삭제 2021.12.03.>
- ④ 전공과목은 전공별로 3과목 이상으로 하고 전공별로 실시한다.
- ⑤ <삭제 2021.12.03.>
- ⑥ 졸업종합시험은 매과목당 100점만점으로 하고, 매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8. 3. 1, 2011. 3. 1, 2012.03.01., 2017.09.01., 2018.12.14.>
- ⑦ 졸업종합시험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09.01.>
- ⑧ <삭제 2018.12.14.>
- ⑨ <삭제 2018.12.14.>
- ⑩ 복수전공 이수자는 본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1.12.03.>

제69조(졸업종합시험의 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졸업종합시험과목을 부분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단, 졸업 마지막 학기에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국외교류대학에 3학년 이후 4학기 이상 학점교류 수학자는 졸업종합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4., 2010.12.10>

1. 영어과목 면제(단, 2008학번 이전 입학생만 적용한다) <개정 2008. 3. 1, 2011. 3. 1>
 - 가. 영어관련 대학정책과목(인문계열 18학점, 자연계열 및 예·체능계열 12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4.0이상인자, 단 본 대학에서 실제이수학점이 인문계열 18학점, 자연계열 12학점이 안될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03.01., 2020.03.13.>
 - 나. 재학중 TOEIC 또는 TOEFL 등의 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 ㄱ. TOEIC은 인문계열 650점, 자연계열 600점, 예·체능계열 500점 이상 취득한 자. (공인시험과 교내모의고사 성적을 포함)

ㄴ. TOEFL(CBT)은 인문계열 200점, 자연계열 180점, 예·체능계열 160점 이상 취득한

자. (공인시험만 해당)

다. 영어캠프에 2회 이상 참가한 자(수료증 사본 첨부)

라. 영어권 국가에 4주 이상 어학연수를 다녀온 자 (등록증 사본 첨부)

마. 교내(대학주최) 및 교외(광역시·도 이상)의 각종 영어경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상장 사본 첨부)

바. 영어과목을 정규과정(대체과목 포함)외 어학당에서 2분기(14주) 이상 수강한 자.

사. Work and Travel, 해외 Internship 등에 4주 이상 해외연수 프로그램 이수자 (관련서류 첨부)

아. 국제기술봉사단에 참여한 학생(Tech. Corps, NGO 등)

자. 동서글로벌프로그램 이수자(관련서류 첨부) <개정 2007.5.1>

2. 컴퓨터과목 면제

가. 컴퓨터관련 대학정책과목(전 계열 12학점)의 총평균평점이4.0 이상인 자. 단 본 대학에서 실제이수학점이 12학점이 안될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03.01., 2020.03.13.>

나. PCT 600점 이상인 자

다. 자격증 취득자 <개정 2020.03.13.>

ㄱ. Solaris 자격증 취득자 : CSA I, II (Certified Solaris Administrator)

ㄴ. Network 자격증 취득자 : OCNA(Oracle Certified Network Administrator)

ㄷ. Java 자격증 취득자 : OCJP(Oracle Certified Java Programmer)

OCJD(Oracle Certified Java Developer)

ㄹ. Microsoft Office프로그램관련 자격증(MOS 마스터, ITQ OA마스터, ICDL Start Certificate)<개정 2010.11.01>

라. 교내(대학규모) 및 교외(광역시·도 이상) 컴퓨터관련 경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상장 사본 첨부)

3. 전공과목 면제

가. 각 전공에서 지정한 전공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20.03.13.>

나. 자격증의 심사는 전공에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다. 제70조에 따라 졸업종합시험 대체를 선택한 자. <개정 2023.06.09.>

라. 전국 대학생 학술논문 발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상장 사본 첨부)

제70조(졸업종합시험의 대체) ① 교과과정의 성질상 졸업논문, 실기발표(작품발표), 포트폴리오 등으로 졸업종합시험을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2023.10.10.>

② <개정 2018.09.01.> <삭제 2021.12.03.>

③ 졸업논문인 경우 3명까지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④ <삭제 2018.09.01.>

⑤ <삭제 2018.09.01.>

제71조(논문 등의 지도) ① 학과에서는 제출된 논문 및 실기(작품) 계획서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지도교수는 논문작성 또는 실기(작품) 제작, 연구윤리 등을 지도한다. <개정 2008. 3. 1., 2018.09.01., 2022.08.29.>

② <삭제 2018.09.01.>

제72조(논문 등의 분량) 졸업논문, 실기(작품)의 분량은 학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2022.08.29.>

제73조(실기(작품)의 지도, 심사 및 평가) ① 실기(작품) 발표를 하는 전공의 졸업예정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졸업작품을 제출하며, 학과에 따라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8.09.01., 2022.08.29.>

② 발표한 실기(작품)은 학과에서 소정기간 내에 심사하고 평가한다. <신설 2018.09.01.> <개정 2022.08.29.>

제74조(논문 등 심사위원 위촉) ① 학과에서는 매 학기 졸업논문, 실기(작품)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08. 3. 1, 2018.09.01., 2022.08.29.>

② 졸업논문, 실기(작품) 심사는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며, 지도교수도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8.09.01.>

제75조(논문 등 심사 및 합격) ① 졸업논문, 실기(작품)의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C등급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8.09.01.>

② 논문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결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요지서를 소속 전공 책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전공 책임교수는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논문 등의 제출) ① 졸업논문, 실기(작품) 결과보고서는 전기 졸업자의 경우 매년 12월말, 후기졸업자의 경우 6월말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② 보고서는 2부 제출하여야 하며,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 또는 그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논문 및 작품의 발표) ① 논문, 실기(작품)는 제출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8.09.01., 2022.08.29.>

② 실기 또는 작품의 발표는 개인 또는 공동으로 하되 모두 공개발표로 한다.

제78조(논문 등의 형식) 논문, 실기(작품)의 형식은 학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2022.08.29.>

제79조(논문 등의 무효) 졸업논문, 실기(작품)에서 연구윤리 위반 등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하고 졸업을 유보한다. <개정 2018.09.01.>

제80조(논문 등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논문, 실기(작품)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소정기간 내에 추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② <삭제 2018.09.01.>

③ 소정기간 내에 졸업논문, 실기(작품)을 합격으로 판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을 유보한다. <개정 2018.09.01.>

제81조(각종 양식 제정) 졸업논문, 실기(작품) 발표에 필요한 각종 양식은 각 학과별로 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8.09.01., 2022.08.29.>

제 16 장 졸업의 기준

제82조(졸업의 기준) 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등록학기는 4년 8학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조기졸업은 예외로 한다.
2. 학칙 제31조 제1항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으로 하고, 수업연한에 따른 추가 학점은 35학점으로 한다. 단, 미래커리어대학 소속 2020학번 이후 입학생 및 외국인, 계약학과 등 정원의 전담학과는 12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03.01., 2018.12.14., 2020.03.13.,

2023.03.03.>

3. 교과과정 이수조건은 각 전공마다 규정된 교양필수과목, 교양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1., 2018.09.01., 2018.12.14.>

제 17 장 조기졸업 [제목개정 2018.12.14.]

- 제83조(자격) ① 제82조의 졸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4.30이상인 자를 조기졸업 대상자로 한다. 단,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와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8.12.14.>
- ② 편입, 재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최종학기 개강 1주 이전에 능력별 조기졸업 희망 신청을 교무처장에게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4.>
- ④ 전 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반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미래커리어대학 재학생은 최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8.12.14.>

제 18 장 계 절 학 기

제84조(대상) 계절학기에서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5조(등록금) 계절학기의 등록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 19 장 학 점 등 록

제86조(학점등록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을 취득하지 못한자 <개정 2010.02.01., 2020.03.13.>
2. 학칙 34조의 4에 의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득한 자 <개정 2010.02.01., 2021.12.03.>
3. 미래커리어대학에 입학한 자 <신설 2018.12.14.>

제87조(학점등록금) ① 학점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학점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6조 제3호의

학점등록자는 해당학기 수강 학점이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호로 적용한다. <개정

2006.10.1., 2020.03.13.>

1. 해당학기 수강 학점이 6학점 이내인 경우 수강 학점당 해당학기 등록금의 18분의 1 해당액

<신설 2020.03.13.>

2. 해당학기 수강 학점이 7학점부터 9학점까지의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신설

2020.03.13.>

3. 해당학기 수강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신설 2020.03.13.>

② <삭제 2020.03.13.>

③ 재입학생 중 학점등록 대상학생은 제1항에 의거한 학점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28.>

④ <삭제 2020.12.11.>

⑤ 학점등록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 내에 교무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0 장 재 입 학

제88조(대상) 재입학은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① 학칙 제26조에 의한 퇴학자.

② 학칙 제27조에 의한 제적자.

제89조(학년) 재입학은 제적 당시와 동일한 전공으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되며, 모집단위가 폐지

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제90조(시기) 제적일로부터 1학기 경과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91조(절차) 재입학 희망자는 학과장,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8.29.>

제92조(학점인정) ① 재학 당시의 취득 학점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하 재입학시는 인하된 학

년, 학기의 취득학점은 취소한다.

- ② 재입학 후의 교과과정 적용은 재입학시 학년,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 21 장 현장실습

제93조(실습시간 및 이수) 학기(계절학기 포함)중 4주 이상 현장실습 참가자에 대해 학기당 30시간 이수

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하고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해외인턴십은 최대 18학점

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제94조(개설) 현장실습 강좌는 총장이 각 전 공별로 3,4학년 각 학기에 개설하며 각 전공, 각 학년의 지도

교수는 현장실습의 담당교수가 되며 현장실습의 결과 및 현장실 습의 성적 및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제95조(산업체, 실습시기 및 평가) ① 산업 체 선정 및 실습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 ② 현장실습 평가 등 세부사항은 별도내규에 의한다.

제96조(정부실업대책의 실습인정)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실업대책(청소년직

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도, 인턴취업지원제도,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등) 참가자도 현장실습을 이

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평가 등은 현장실습내규에 의한다.

제 22 장 영어졸업인증제 <신설 2008. 3. 1> <폐지 2021.12.03.>

제97조(영어졸업인증) <삭제 2021.12.03.>

제 23 장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신설 2014.03.01>

제98조(창업휴학)①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2년(4학기)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다.

- ② 창업휴학시 휴학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창업계획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1항의 경우로 휴학하는 경우는 휴학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제99조(창업 대체학점 인정)①창업동아리 활동을 현장실습교과로 인정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한

후 최대 3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교과로 인정할 수 있는 창업동아리 활동은 별도로 정한다.

제100조(창업학점 교류제)①창업강좌를 계절학기에 개설하여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절 학기에 개설하는 창업강좌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시행) 이 개정세칙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은 1995학년도 졸업예정자에게는 졸업논문 계획서 제출 마감일을 1995년 5월 15일까지로 연기하여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 학과별 모집정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개정전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하되, 개정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하여도 불이익이 없을 경우(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명칭 및 서식 등)에는 개정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 이후부터 시행하되,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중 제12조 졸업종합시험은 1999학년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0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 이후부터 시행하되,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은 1999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자는 이전학칙을 적용한다. 단 1999학번과 함께 졸업하는 학생은 개정된 학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1년8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2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2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3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4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된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2008.1.30>

1.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⑮ 생략
- ⑯ 학칙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제3호 중 ‘학생 취업복지처장’ 을 ‘학생복지처장’ 으로 한다.

⑰ - ㉑ 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2010.09.01>

1. 이 개정규정은 201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학칙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제3호 중 ‘학생 복지처장’ 을 ‘학생취업복지처장’ 으로 한다.
③ - ⑦ 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10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12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09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06월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취득학점의 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취득학점포기에 관한 조항 제52조는 2014년 1학기 취득학점부터 적용한다.
3. (재수강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 재수강에 관한 제50조는 1항은 2014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09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54조(제적처분)의 학사경고 통산 4회 제적의 경우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6조(출석인정)의 취업에 따른 출석 인정의 적용 시점은 2016년 2학기 개강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규정의 개정)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자격) ①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제
2 학년 1학기 초, 제 3 학년 1학기 초 또는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단, 3학년 편입생은 제 3학년 2학기 초 또는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7.1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2.11.>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03.26.>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2.03.>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규정 제3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융합연계전공 학점 중복인정 적용례) 개정 규정 제28조 제2항은
개정 이후 융합연계전공을 신청한 학생에게 적용한다.
3. (졸업종합시험 적용례) 개정 규정 제68조는 2022년 3월 1일 이

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4. (영어졸업시험 적용례) 개정 규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종전 규정에 따라 영어시험(영어졸업인증제 포함) 적용을 받는 학생은 종전 규정 제68조 및 제97조에 따른 2017학번 이전 입학생을 말한다.
5. (컴퓨터졸업시험 적용례) 개정 규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종전 규정에 따라 컴퓨터시험 적용을 받는 학생은 종전 규정 제68조에 따른 2021학번 이전 입학생을 말한다.
6. (외국인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영어졸업시험 적용례) 개정 규정 제68조 제2항은 개정 이후 신·편입생에게 적용하고, 개정 이전 입학한 신·편입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단, 한국어트랙 소속 외국인 학생은 종전 규정 제68조 제2항 및 제97조를 적용하고, 영어트랙 소속 외국인 학생은 종전 규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2.02.28.>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06.10.>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전공 이수과목 적용례) 개정 규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2023학년도 1학기 부전공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3. (복수전공 이수학점 적용례) 개정 규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은 2023학년도 1학기 복수전공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2.08.29.>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12.02.>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부·복수전공 이수포기시 기취득학점 인정 적용례) 이 개정규정 제15조 제6항 및 제22조 제2항은 시행일 기준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3. (재수강 적용례) 이 개정규정 제50조 제1항은 2023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한다.
4. (성적삭제 적용례) 이 개정규정 제52조 제1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3.03.03.>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06.09.>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10.10.>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12.08.>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02.29.>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04.12.>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